

보도자료

マンス マンション・ マリュラ キャン・ナント

보도시점

2025. 2. 26.(수) 15:00

배포

2025. 2. 25.(화) 09:30

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

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동 시행규칙은 입법예고·부처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·시행할 예정입니다.

*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종합부동산세법, 증권거래세법, 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, 주세법,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관세법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,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
[별첨]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문건 (044-215-4110)
		담당자	서기관	권순배 (044-215-4111)







Ⅰ. 주요 개정내용

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* 범위 확대(조특칙)

- * 일반시설(대/중견/중소 1/5/10%)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 적용 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: 15/15/25%, 신성장 사업화시설: 3/6/12%)
-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 수단,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* 시설
 - * ^①반도체 20개, ^②이차전지 9개, ^③백신 3개, ^④디스플레이 6개, ^⑤수소 9개, ^⑥미래형 이동수단 3개, ^⑦바이오의약품 4개
- (개정안) 반도체 · 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

분야	추가 시설(신규 4개, 확대 1개)		
반도체	▶ (확대: 1개)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→ HBM 등 추가		
디스플레이	▶ (신규: 2개)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,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		
수소	▶ (신규: 1개)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		
이차전지	▶ (신규: 1개)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·가공시설		

o (적용시기) '25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

- o (현행) 미래형 자동차,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
 - * ¹미래차 ²지능정보 ³차세대版W ⁴콘텐츠 ⁵전자정보 디바이스 ⁶차세대 방송통신 ⁷바이오·헬스 ⁸에너지환경 ⁹융복합소재 ⁸로봇 ¹항공 우주 ²첨단 소재부품장비 ³탄소중립 ⁸방우산업
- o (개정안) 탄소중립 분야 시설 추가하여 183개 시설로 확대
 - * (탄소중립 분야)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(추가),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(확대)
- o (적용시기) '25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③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

- (현행) 국가전략기술, 일반 R&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&D 세액공제율 적용
- (개정안) 50%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&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&D 공제율 적용
- ㅇ (적용시기)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- 4 국세·관세 환급가산금*,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**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(국기칙·소특칙·법인칙·부가칙·관세칙)
 - *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·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
- **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・법인세・부가가치세 과세
- **(현행)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**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: 연 3.5%*
 - * 환급가산금 이자율(%): ('18)1.8 ('19)2.1 ('20)1.8 ('21)1.2 ('22)1.2 ('23)2.9 ('24)3.5
- (개정안)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* 반영 인하: 연 3.1%
 - * ① 1년 만기 정기예금 年평균 수신금리(%): ('23) 3.84 → ('24) 3.48
 - ② 1년 만기 정기예금 月별 수신금리(%): ('24.11) 3.39 → ('24.12) 3.18
 - ③ 한국은행 기준금리(%): ('23.1~'24.8) 3.50 → ('25.2) 2.75
- (적용시기) ^①국세·관세 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, ^②간주임대료 - '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5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% 인하

- (현행) 매출액 기준별^{*}로 0.1~1% 부과 → (개정안) 요율 50% 인하
 - * [현행] (2천억원 이하) 0.1% / (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) 0.5% / (1조원 초과) 1% [개정] (2천억원 이하) 0.05% / (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) 0.25% / (1조원 초과) 0.5%
- ㅇ (적용시기) '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부터 적용

6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(2병) 폐지

- **(현행)** 최대 **2병**, **2리터**(가격: 미화 400달러 이하)
- **(개정안) 최대 2리터**(가격: 미화 400달러 이하)
- (적용시기)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 · 별송품부터 적용

7 중부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범위 한시적 확대

- (현행)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
 종부세 합산배제
- (개정안) '25·'26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 연장(5년→7년)
- o (적용시기)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Ⅱ. 기타 개정사항

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- □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* 범위 확대
 - * 외국법인 주식 또는 사업ㆍ자산 양수 시 해당 금액의 5~10% 세액공제
 - (현 행) 「소재부품장비산업법」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적용
 - (개정안) 「공급망안정화법」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적용 추가
- □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* 구체화(신설)
 - *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,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
 -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
 않는 경우, 전체 금액의 50%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

2 소득세법 시행규칙

- □ 건축물 멸실·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확대
 - (현 행) 건축물 멸실·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(10%p) 적용 배제
 - (개정안)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목적 빈집 방치 사례를
 방지하기 위해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 확대(2년→5년)

3 법인세법 시행규칙

- □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
 - (현 행)
 (원칙)
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비율

 (예외)
 참석인원(공동행사비), 구매금액(공동구매비) 등
 - (개정안) 공동연구개발비^{*}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^{**} 분담기준 마련
 - *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
 - ** (고정비) 소유지분비율 및 (고정비 외) 사용횟수비율

□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

- *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거래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승계 가능
- (현 행)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 거래비중이 30%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승계 가능
- (개정안)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·간접 거래비중이 20%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 등 추가

□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

- o (현 행)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: 5년
- (개정안)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

4 상증세법 시행규칙

- □ IFRS17 회계기준에 맞추어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
 - (현 행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상장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(=자산-부채) 산정시 부채에 비상위험준비금 포함
 - (개정안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·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

5 관세법 시행규칙

- □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
 - (현 행)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수입물품 실험·분석 국가기관,
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에 대해 80% 관세 감면
 - (개정안) 식품안전정보원 추가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)
- □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
 - (현 행)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,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에 대해 수입 후 1년 이내 재수출 시 면세
 - (개정안)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